

1999. 6.

## 제정 및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[총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안]

[총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]

[총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]

총무위원회

#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	'99. 3.11.	'99. 3.11	'99. 6. 3	'99. 6. 3.	총무 담당관
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	'99. 5. 27.	'99. 5. 27	'99. 6. 3.	"	기획 예산과
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	"	"	"	"	"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○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 
근무환경 개선·근무능률 향상·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 
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  
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 
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
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) 주요골자

-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,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.
-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, 연구, 특수기술, 직열, 기능, 고용, 별정직 공무원으로 함.
-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·감독의 책임이나 인사·예산·경리·물품출납·비서·기밀·보안·경비·자동차운전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.
-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·업무능률 향상·고충처리 등으로 하고,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.
-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.

## 나.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실효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수요가 없는 등 사회·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.

## 2) 주요골자

### ○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 - 7개 위원회

- 충주시관용심사위원회
-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
-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
- 충주시부동산증개업분쟁조정위원회
- 충주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
- 충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

### ○ 신규 기능 추가

-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위원회 기능
-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위원회 기능

다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## 1) 제안이유

○ 한시 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설치 기한 및 한시정원이 6명중 5명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 2) 주요골자

○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는 “1,204명”에서 “1,203명”으로 1명을 감축하고

- 부칙(조례 제373호, 1999. 9. 30.)제3조중 “정원 6명은 1999년 6월 30일”을 “정원 5명은 2001년 6월 30일”로 존치기한을 연장하며
- (다른조례개정)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(조례 제372호, 1998. 9. 30.)제4조중 “1999년 6월 30일”을 “2001년 6월 30일”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코자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예관한조례안

○ 생략

나.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-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 운영하고자 함.
- 그 정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다른 유사 위원회와 통합 설치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
- 그 통합되는 위원회의 내용은 거의 대다수가 구성과 운영, 기능, 회의로 조문이 배열되어 있고 협의할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안건을 작성 제출 협의 및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.

○ 그러므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와 통합 기능을 부여하여도 가능수행이 가능함은 물론 예산 절약등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.

#### 다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○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22일 설치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였으나

○ 이에 생산자와 중도매상들의 재래시장 상행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려워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될 때까지 관리사업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며

○ 1997년 6월 19일 행정자치부(구 내무부)로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승인을 얻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.

○ 그러나 아직도 현재의 운영상황을 미루워 볼 때 민간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차 1999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기구로 연장승인 얻어 직영체제로 존속후 민간위탁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임.

## 4. 질의·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 [질의]

○ 설문조사 대상이 50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대상 500여명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고 다양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?

☞ 답변 : 전직원이 대상은 아니고 설문조사는 가입희망자중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직원에게는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하였음.

### [질의]

○ 가령 전체 대상자중 20명만이 설립한다고 할 때도 본 조례가 필요한지?

☞ 답변 : 추후 가입인원과 조례 제정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

### [질의]

○ 읍·면·동 직원에게도 설문조사 하였는지?

☞ 답변 : 본청 직원에게만 표본 조사를 하였음.

### [질의]

○ 가입대상자와의 마찰 예상은?

☞ 답변 : 없다고 봄.

## 나.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[질의]

○ 폐지조례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

☞ 답변 : 부칙으로 자동 폐지가 가능함.

### [질의]

○ 폐지되는 7개 위원회의 모든 역할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할 수 있는지?

☞ 답변 :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.

### [질의]

○ 폐지되는 7개 조례 선정 과정은?

☞ 답변 : 전체 40개 위원회중 해당 부서와 종합 검토해서 추진

## 다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[질의]

○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수는?

☞ 답변 :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전국 20개소로 알고 있음.

### [질의]

○ 민간위탁한 곳은?

☞ 답변 : 정착이 된 곳은 위탁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(구리 시등) 우리시도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### [질의]

○ '95년부터 만 4년인대 위탁할 생각은?

☞ 답변 :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됨. 또한 불법유통등이 우려됨.

### [질의]

○ 조례가 2001년까지 연장되었는데 또 바꾸어야 할 것인지?

☞ 답변 : 기간내에 운영을 정상화하여 판단하여야 함.

## 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다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조례안 : 원안가결

## **6. 불 임**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 1부

나.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다.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조례안 1부